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간주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예산액	증감액
합	계	5,184,140,208	5,184,019,208	121,000
일	반 회 계	4,458,580,249	4,458,459,249	121,000
특	별 회 계	725,559,959	725,559,959	0
	기 타 특 별 회 계	423,695,729	423,695,729	0
	농어촌주택사업	13,553,190	13,553,190	0
	의 료 급 여 기 금	380,112,539	380,112,539	0
	동부권특별회계	30,030,000	30,030,000	0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01,864,230	301,864,230	0
	지 역 개 발 기 금	301,864,230	301,864,230	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,465,04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